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3. 10. 13

다. 상정일자 : 2003. 10. 10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충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나. 제안사유

-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개최결과, 평가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혼선과 문제점등을 최소화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행사지원경비, 개최결과사후평가등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함(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함(제10조)
- 축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개최 일로부터 40일전까지 축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축제추진위원회 심의조서에 의하여 심의함(제11조)
-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함.(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례화하는 것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전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견”

첨 부 :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①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축제의 행사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
- ③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시후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축제의 범군민자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 지역내 각급기관·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장기간 외국에 출타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 ③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 ④ 기타 품의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⑤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8조(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실·과·식속기관 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무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당해 축제의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40일전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축제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축제추진위원회 심의조서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최 만료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축제의 결과 평가) ①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고한 축제결과 근거로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축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함 (안 제12조의 3)

- 온천수 사용량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공의사업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급수장치를 폐선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20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명)

-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 및 공동급수관련 규정이 변경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절차상,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 결”

첨 부 :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